

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이유
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과 휴폐업 등이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

## 2. 주요골자

-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 능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며
-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첨부와 같이(별표5)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 원 이하에서 정함

## 3. 관계법령
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

## 4. 검토의견

- 옥외광고업을 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옥외광고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.9㎡ 이상의 작업장
- 옥외 광고 대행업은 연면적 6.6㎡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된다는 사항이며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로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.